



제334회 임시회

2022. 1. 25.(화)

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 서

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

방 한 일 의원

제안 설명서

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,
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과 김은나 의원님 등 열(10)분의 의원님이
공동발의해 주신,

『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』
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에
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
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

지난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대형화재로 노동자
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. 그리고 올해 1월 5일 평택 냉동
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에 나선
소방관 3명이 숨지는 등

최근 대형화재 사고 발생이 잇따르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.

특히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·교직원·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다음으로, 주요 내용을 보면

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‘학교’, ‘화재사고’, ‘소방시설’, ‘소방시설 등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, 조례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,

안 제3조에서는 ‘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’ 하는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과 예산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.

또한 안 제5조에서는 ‘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’, ‘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’ 등 “교육안전 종합계획”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,

안 제6조에서는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,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·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.

또한 안 제7조에서는 안 제6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고,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·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

□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·교직원·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,

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

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